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제30호
----------	-----------

제출일자 : 2006. 6.15

제출자 : 사천시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정원”을 우리시 정원의 총수에 규정하며, 정·현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직렬을 조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정원 보강

- 6급 1명, 8급 2명

나. 직렬조정

-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전환
 - 기능직 3명(8급1, 9급 1, 10급 1)삭감 ⇒ 일반직 8급 3명 증원

다. 정원조정 내역

- 정원의 총수 : 853명 → 856명(3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837명 → 840명(안 제2조제1호)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104회 - 총무위 부록)

나. 예산조치 : 소요경비 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6. 4. 20~5. 10)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 조례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853명”을 “856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837명”을 “840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합계	856	456	16	132	57	22	102	71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677	369	10	84	39	20	90	65
4급	6	3	1	2				
5급	45	18	2	6	5	1	7	6
6급	170	98	3	19	11	5	28	6
7급	217	116	1	35	10	6	21	28
8급	163	94	3	20	10	4	15	17
9급	76	40		2	3	4	19	8
별정직 합계	15	1		14				
6급상당	12	1		11				
7급상당	3			3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관								
지도사	29			29				
기능직 합계	134	85	6	5	18	2	12	6
6급	5	4			1			
7급	14	12		1	1			
8급	24	18	2		3	1		
9급	51	33	4	4	4		6	
10급	40	18			9	1	6	6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853명</u>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837명</u></p>	<p>제2조(-----) ----- -----<u>856명</u>-----, --- -----.</p> <p>1. ----- : <u>840명</u></p>	<p>별표중 총합계 중 <u>총계 853, 본청 453</u></p> <p>일반직 합계중 <u>총계 671, 본청 364,</u> <u>사업소 38</u></p> <p>6급중 <u>총계 169, 본청 97</u></p> <p>8급중 <u>총계 158, 본청 90, 사업소 9</u></p> <p>기능직 합계중 <u>총계 137, 본청 87, 사업</u> <u>소 19</u></p> <p>8급중 <u>합계 25, 사업소 4</u></p> <p>9급중 <u>합계 52, 본청 34</u></p> <p>10급중 <u>합계 41, 본청 19</u></p>	<p>별표중 총합계 중 <u>총계 856, 본청 456</u></p> <p>일반직 합계중 <u>총계 677, 본청 369,</u> <u>사업소 39</u></p> <p>6급중 <u>총계 170, 본청 98</u></p> <p>8급중 <u>총계 163, 본청 94, 사업소 10</u></p> <p>기능직 합계중 <u>총계 134, 본청 85, 사업</u> <u>소 18</u></p> <p>8급중 <u>합계 24, 사업소 3</u></p> <p>9급중 <u>합계 51, 본청 33</u></p> <p>10급중 <u>합계 40, 본청 18</u></p>	

정원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서

□ 정 원 : 853명 → 856명(6급 1명 · 8급 2명 증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지 급 기 준	비 고
총 계		123,215,300		
인 건 비	소 계	108,784,360	· 직급별 2006 예산편성 기준에 의함	· 세부내역 -붙임참조
	기 본 급	59,953,200		
	수 당	19,929,380		
	정액급식비	4,680,000		
	교통보조비	4,440,000		
	명절휴가비	5,995,320		
	가계지원비	9,992,200		
	연가보상비	3,794,260		
물건비	기관운영추진비등		· 기관운영, 부서운영, 정원가산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특정수행활동비	
이전경비	연금부담금 등	14,430,940	·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국민건강보험금	

□ 세부내역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원)	산출근거(원)
총계		123,215,300	
○ 인건비		108,784,360	
- 기본급		59,953,200	(26,578,800×1명) + (16,687,200×2명)
- 수당	소계	19,929,380	
	정근수당	4,996,100	(2,214,900×1명) + (1,390,600×2명)
	정근수당가산금	2,760,000	(1,320,000×1명) + (720,000×2명)
	가족수당	2,520,000	(70,000×3명)×12월
	관리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9,653,280	(3,701,280×1명) + (2,976,000×2명)
- 정액급식비		4,680,000	1,560,000원×3명
- 교통보조비		4,440,000	(1,560,000×1명) + (1,440,000×2명)
- 명절휴가비		5,995,320	(2,214,900×1명)×60%+(1,390,600×2명)×60%
- 가계지원비		9,992,200	(2,214,900×5회×1명)×40% +(1,390,600×5회×2명)×40%
- 연가보상비		3,794,260	(2,214,900×1/30×20일×1명) +(1,390,600×1/30×20일×2명)
○ 물건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이전경비		14,430,940	
- 성과상여금		3,000,000	1,000,000×3명
- 연금부담금		1,789,470	79,882,580×2.24%
- 국민건강보험		1,721,470	79,882,580×2.155%
- 연금지급금		7,920,000	2,600,000×3명

관 련 법 령 발 취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 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규정

제19조(한시정원) ① ~ ⑤ 생략

⑥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5.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 보강지침(행정자치부)

○ 사천시 정원보강

3명(6급 1명, 8급 2명) 보강